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3일, 남인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남인순의원)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행법 제47조제1항제4호 나목은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금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¹⁾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는 약국의 명칭으로 사

1)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나 .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

용할 수 없는 표시를 각 목에서 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금지 명칭의 유형 중 하나로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추가하는 것임.

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제2항에 따라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은 명칭 사용 등으로 소비자나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 도매상은 소매업소 또는 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파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이하 생략)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	안 제47조제1항제4호다목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1)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u>한약·수입의약품</u>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2) <u>수입의약품</u>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3)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	4)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	5) <u>“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u>

□ 최근 창고형·공장형 약국 등 대형 유통 구조를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여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되고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약국의 명칭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금지명칭의 유형에 ‘창고형’ 등 상업적 표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환자 보호 및 약국의 공공성 제고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47조제1항제4호³⁾는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약국의 고유 명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국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5호를 신설하여 개정 내용을 따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현행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 나목은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금지 명칭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7조제1항제4호 다목 2)에서는 금지 표시 대상에서 ‘한약’을 제외하

3)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각 목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 목 생략)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 있는바⁴⁾ 기존의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한약 전문 취급 명칭을 허용할 것이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안 제47조제1항제4호 다목 5)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므로,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이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로 금지 대상인 명칭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의 시행과 함께 확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됨⁵⁾.

□ 그런데, 법 시행 시점에 이미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5) 「약사법」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하며,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7항 또는 제85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이 도입하는 규제가 약국개설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5호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하며, 금지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에게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현행법 제47조제1항제4호는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약국의 고유 명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국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4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개정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법 시행 시점에 이미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수정주요내용

- 가. 약국개설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5호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7조제1항제4호다목 삭제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 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 다. 금지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에게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신설).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 시행 전에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약국 명칭과 관련하여 이 법률을 인지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행정지도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7조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 고유 명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 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 ----- ----- ----- ----- -----.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 ----- ----- ----- ----- -----.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생략)	4. ----- ----- ----- ----- ----- ----- -----.	4. ----- ----- ----- ----- ----- ----- -----.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가.·나. (개정안과 같음)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와 관련한 사항
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

1) 의약품도매
상 또는 의약
품의 품목허가
를 받은 자의

<삭 제>

영업소로 오인
하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

2)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
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
적으로 취급한
다고 나타내거
나 암시하는
표시

3)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
과 유사한 표
시

4) 해당 약국
의 소재지와 1
킬로미터 이내
의 거리에 개
설된 의료기관
과 동일한 명
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
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

감독 등의 관
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
시하는 표시

5) “창고”, “공
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
외국어 등 소
비자 또는 환
자가 의약품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신 설>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
칭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도매
상 또는 의약
품의 품목허가

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
하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
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
적으로 취급한
다고 나타내거
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
과 유사한 표
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
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
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
수한 관계가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있음을 나타내 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u> <u>마. 약국의 기능 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 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 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표시</u> ② ~ ⑪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약국 고유 명 칭 사용에 관한 경</u>
-------------------	---	--

		<u>과조치) 이 법 시</u> <u>행 당시 제47조제</u> <u>1항제5호마목의</u> <u>개정규정에 해당하</u> <u>는 표시를 약국의</u> <u>고유 명칭으로 사</u> <u>용하고 있는 약국</u> <u>개설자는 같은 개</u> <u>정규정에도 불구하</u> <u>고 이 법 시행일부</u> <u>터 6개월까지는 해</u> <u>당 표시를 약국의</u> <u>고유 명칭으로 사</u> <u>용할 수 있다.</u>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 고유 명칭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u>약국의 명칭</u>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허위광고</u> ----- ----- ----- ----- ----- ----- -----

<신 설>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

② ~ ⑪ (생 략)	<u>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u> <u>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u> <u>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u> <u>시</u> ② ~ ⑪ (현행과 같음)
--------------------	---